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주)는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 차이나H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에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 차이나H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미래에셋 차이나H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미래에셋자산운용 (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12년 08월 17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2년 08월 27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수익증권 10조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에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 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알림]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미래에셋 차이나H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79596)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C-e	종류 C-I	종류 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9598	79599	78801	AB74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보수가 다른 여러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조원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예정금액 한도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판매)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판매)장소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매입, 환매가 가능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미래에셋 차이나H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79596)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C-e	종류 C-I	종류 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9598	79599	78801	AB74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자	내 용
2008.02.15	최초 설정
2008.12.08	종류 A, 종류C-e의 판매보수인하
2009.04.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펀드명칭 변경 [미래에셋맵스 차이나 H 인덱스 주식형투자신탁1호→ 미래에셋맵스 차이나H 인 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2010.02.16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0.12.10	지수 Methodology 변경사항 반영 종류 C-I 수익증권 가입자격 수정(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포함)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소규모펀드 해지 등에 관한 사항)
2011.10.1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권정훈 말소 / 김철민 신규)
2012.03.26	집합투자업자 합병(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미래에셋자산운용(주)) 투자신탁 명칭변경(舊 미래에셋맵스 차이나H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2012.06.29	종류 F 신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
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67번지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우.100-210) ☎ 1577-1640

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12.07.31 현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 자기구수	운용자산 규모	
김철민	1975	팀장	21개	1,432억	전북대 경영학 현대증권 IT본부 현대증권 리서치 센터 현)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부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규모: 해당사항 없음 개수: 해당사항 없음

*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Index/ETF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집합투자기구를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 간	(책임) 운용전문인력
2008.02.15~2011.10.13	권정훈
2011.10.14~2012.03.25	김철민
2012.03.26~2012.08.26	윤주영
2012.08.27~현재	김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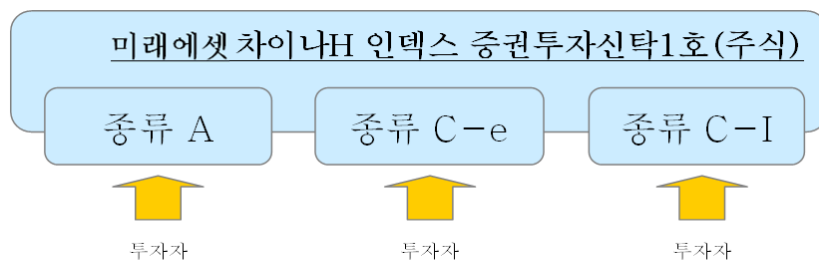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최초 설정일	가입자격 ^{주1)}	수수료		보 수			
			판매(선취)	환매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종류 A	2008.02.15	제한 없음	납입금액의 1.0%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0.30%	0.56%	0.06%	0.02%
종류 C-e	2008.02.15	온라인투자자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0.30%	0.40%	0.06%	0.02%
종류 C-I	2008.02.15	집합투자기구등	—		0.30%	0.03%	0.06%	0.02%
종류 F	—	직관	—		0.30%	—	0.06%	0.02%

주1) 가입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인 홍콩(HONG KONG, 香港)에 상장된 중국 본토기업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가지수인 “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1호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한국거래소와 유사한 것으로서 홍콩(HONG KONG)에 소재한 시장에 상장된 것 및 동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예탁증권에 한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어음” 등이라 한다)
⑤	장내파생상품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
⑥	장외파생상품	-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
	집합투자증권등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⑦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0%이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u>자산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이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u>

			100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⑧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보유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증권의대여	투자신탁보유 증권총액의 50%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한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⑩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보유 증권총액의 20%이하	① 내지 제④에 의한 증권에 대한 차입
⑪	금리스왑거래	채권또는채무 증권총액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권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⑫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법에 따라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대금을 대여(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⑬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포함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 아래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⑦, ⑧, ⑨, ⑩, ⑪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 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 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 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 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 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 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 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 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 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 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 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동일법인 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 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 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 품을 매매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및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제외한 집합투자증권 평가액(현금, 금융기관에의 예치, 단기 대출 및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증거금 제외)의 합계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계열회사 발행주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 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아래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동일종목투자”, “동일법인 발행주식”, “파생상품 매매”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의 지수의 구성종목에 투자합니다.

또한, 투자 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를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보수차감전, 세전 수익률 기준)

추적오차(Tracking Error)관리방안

추적오차율 = |과거1년간 펀드의 기간수익률 - 과거1년간 벤치마크 기간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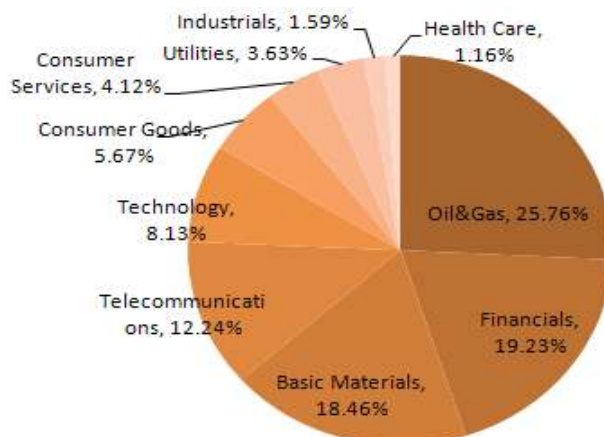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상기 방식으로 계산된 추적오차율이 -5% ~ +10%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며, 추적오차를 허용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추적오차율이 10%이하가 되도록 리밸런싱합니다. 다만, 상기 관리방안이 추적오차 최소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H주인덱스]

- Hang Seng Bank의 자회사인 Hang Seng Index Services Ltd. 에서 발표하는 지수로 홍콩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H-주식으로 구성(HSCI지수에 포함된 모든 H주로 구성)
- H-share : 일반적으로 중국정부 소유의 국유기업 또는 정부지분이 30%이상이면서 수익의 50%이상 이 중국본토에서 발생하는 기업으로서, 홍콩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본토 상장기업의 주식을 말함. 주식의 액면통화는 중국본토 통화인 인민폐(Renminbi)이나, 홍콩시장에서 홍콩달러(HKD)로 거래되는 특징이 있음.
- 지수 일반개요
 - 가. 기준일 및 기준지수 : 2000년 1월 3일, 2,000pt
 - 나. 산출 방식 : 유동성을 감안한 시가총액 가중 방식
 - 다. 편입종목수 : 2010년 12월 6일 현재 40종목
 - 라. 정기 변경 : 연 4회
 - 마. 개별종목한도: 10%
- 해당지수에 대한 정보는 <http://www.hsi.com.hk/>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섹터별 비중,>

2011년 2월 14일 기준>



[홍콩 지역 시장의 현황(한국비교)]

(source: worldbank.org)

일본	2007	2008	2009	대한민국(2009)
GDP(십억, US\$)	207	215	211	833
GDP 성장률(연간%)	6.4	2.2	-2.8	0.2
총인구(백만)	6.9	7.0	7.0	48.7
인구성장률(연간%)	1.0	0.7	0.4	0.3
인플레이션(연간%)	2.0	4.3	0.6	2.8

※ 비교지수의 종목수, 비율 등은 시장상황 및 지수산출기관의 지수산정방식의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집합투자기구가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한편, 이 투자신탁은 홍콩시장에 대한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외화 자산 대비 90% 이상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이나,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변동, 유동성 비율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 환헤지란?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주식등)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위험종류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개별위험	종목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위험	주식가격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위험	파생상품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환율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율변동위험 경감을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면, 이로 인한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의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반대로 환헤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변동,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나. 특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위험종류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해외투자 위험	국가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해외투자 위험	자금송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 위험	개별국가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용성과가 국내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국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유형의 일반 국내투자형 집합투자기구보다는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국가의 경제여건 등은 항상 급변동이 가능합니다.
인덱스투자 위험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아래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 제약요소 :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인덱스운용시 활용하는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환율변동(해외투자시), 운용/판매등 각종 보수, 위탁매매수수료, 지적재산권 수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운용관련 비용발생, 너무 작은 운용규모, 대량 또는 빈번한 실정/해지 등
인덱스투자 위험	시장수익률 추종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위험종류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위험	투자자금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자산이 매각이 어

	회수위험 (유동성위험)	려운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위험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다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운용실무상 위험 (기준가격 오류 등)	운용실무 위험 (해외투자용)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중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운용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운용실무상 위험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관련 위험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세금관련 위험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해지/해산 위험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이해상충	잠재적 이해상충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같음)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거래 또는 위 거래로 인하여 얻거나 받은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공시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잠재적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제 3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이어야 합니다. 이상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상의 제한을 준수합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 (Soft-Dollar Commission)	소프트 달러 수수료 (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업자는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구별되는 이익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장의 관행을 엄중하게 준수하면서, 회사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 달러 수수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으로 회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Research)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정되며 출장, 숙박, 엔터테인먼트, 일반 사무용품 및 서비스, 사무실 및 기자재, 회원권, 임직원 보수 또는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 집합투자기구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 즉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위탁매매거래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은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 및 운용전략 등을 기준으로 원본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주식에 투자하므로 **위험등급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위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위험등급 및 투자자유형은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 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예시)
1	매우높음	-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예상되는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의 20% 이상인 것)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높음	-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5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예상되는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의 20% 이하이거나, 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조건 하에

		서 원금보존추구형 투자전략을 갖는 것)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보통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5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예상되는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 자금의 0% 수준으로서 원금보존추구형 투자전략을 갖는 것) -장내파생상품만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부동산실물(오피스빌딩등)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낮음	-투자적격등급(BBB-이상)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매우낮음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위험자산 : 주식, 투기등급채권(BB+이하), 상품(Commodity), 상장부동산펀드(리츠:REIT) 등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

-최대손실가능비율이라 함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가능비율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가능비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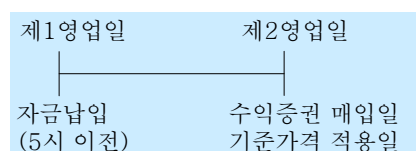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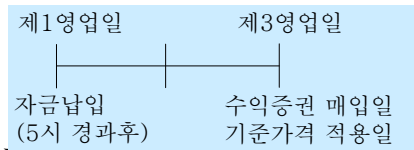
종 류	구 분	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종류 A	제한없음	있음
종류 C-e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전자매체(온라인 ; On-Line)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입·환매하는 투자자	없음
종류 C-I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중전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법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없음
종류 F	집합투자업자를 판매회사로 하여 직접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하는 투자자	없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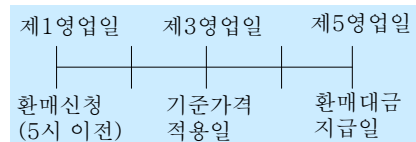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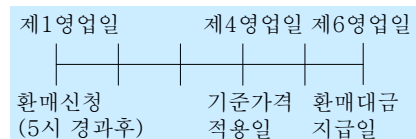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4)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3영업일전 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4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집합증권의 부분환매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

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8) 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는 빈번한 환매를 억제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하실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빈번하게 환매하실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비용 및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는 계속 투자 중인 기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환매수수료 부과 후에 실제로 수령하시는 금액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전에 예상하신 금액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집합투자기구(펀드)에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내 용
종류 A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C-e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종류 C-I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종류 F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 다만, 이익금은 “투자원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재투자된 지분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됩니다.

※ 환매수수료의 면제

1. 이 투자신탁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전부가 환매되는 경우
2.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 변경에 대하여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는 제외)
3.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른 목적식 투자자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 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공고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간 판매보수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 지분증권 (주식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은 평가 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의함. (예상배당금의 추정은 증권사 추정 예상배당금과 당사가 추정한 예상배당금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정))
비상장 지분증권 (주식 등)	비상장지분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 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에 의함.
시가형성전 지분증권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분증권의 시가형성 전까지의 평가는 기 상장지분증권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전환 또는 행사 기준일을 영업년도말로 보는 경우에는 기 상장지분증권의 평가액에서 예상배당액을 차감하여 평가. 최초공모 지분증권의 경우 시가가 형성되는 날까지는 취득가액으로 평가.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는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이 발표하는 가격에 의함.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는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에 의함.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함)의 평가는 평가 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산술 평균한 가격에 의함.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산술 평균한 가격에 의함.
외화표시상장증권	외화표시 상장증권은 당해 증권이 상장된 증권시장의 최종시가에 의함.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의함.
외국집합투자증권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에 의함.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의함.
기업어음과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기업어음증권, 기업어음증권이 아닌 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 증서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에 의함.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은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에 의함. 다만 그러한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기타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거나 매각이 제한되는 등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투자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① 종류 A 수익증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 / 후취수수료	납입금액의 1.0%	매입시 선취수수료 부과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
전환수수료	-	-

② 종류 C-e 수익증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 / 후취수수료	-	-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전환수수료	-	-

③ 종류 C-I 수익증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 / 후취수수료	-	-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전환수수료	-	-

④ 종류 F 수익증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 / 후취수수료	-	-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전환수수료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①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A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3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56%	
신탁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6%	
일반사무관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2%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16%	사유발생시
총보수 · 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1.10%	-

증권 거래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20%	
---------	----------------	--

②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e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3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40%	
신탁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6%	
일반사무관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2%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16%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94%	—
증권 거래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20%	

③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I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3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	
신탁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6%	
일반사무관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2%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16%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57%	—
증권 거래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20%	

④ 종류 F 수익증권

종류 C-I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3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	
신탁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6%	
일반사무관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2%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16%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54%	—
증권 거래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20%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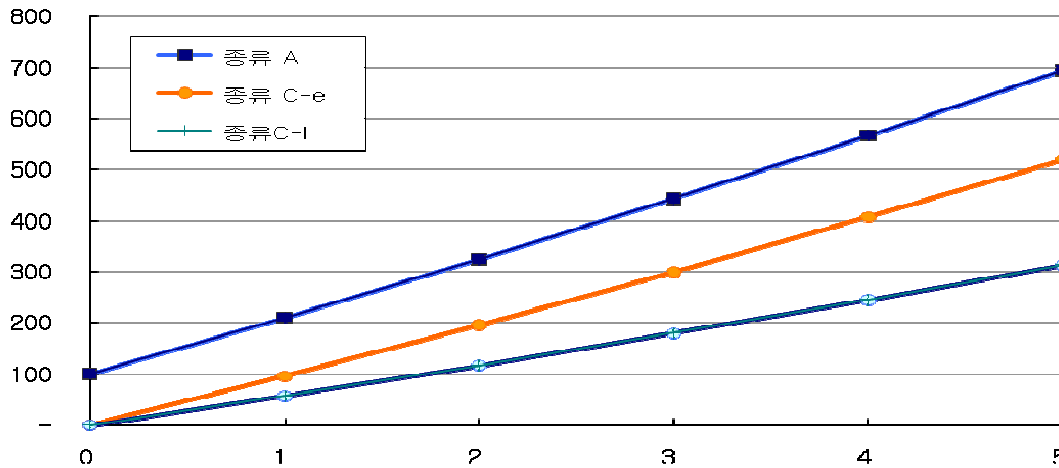
주2) 증권거래비용은 최근 계산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3) 설정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1,000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210	443	694	1,413
종류 C-e	96	299	520	1,153
종류 C-I	57	179	313	701
종류 F	55	174	303	680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중 기타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의 내역을 포함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2.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3.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4.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5.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6.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8.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이 해외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 해외 투자자산의 안전한 보관등을 위해 이용하게 되는 자산보관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 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 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또한 집합투자기구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

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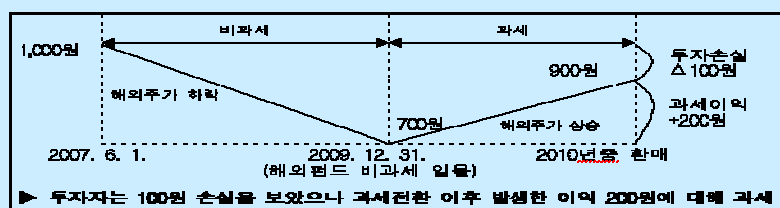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과세 기간중 발생한 200원의 이익은 비과세기간의 300원의 손실과 상계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투자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

제 받게 됩니다.

※ **기준가격**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적용 사례

예 1)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수익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 = 15.4원

예 2)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 원

예 3) 기준가격상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자산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 = 15.4원

예 4) 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 원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제외한 아래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각각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항 목	4기 ('12.02.14)	3기 ('11.02.14)	2기 ('10.02.14)
운용자산	17,320	21,453	26,957
증권	16,194	20,072	23,794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026	820	3,162
기타운용자산	100	560	0
기타자산	68	-48	1,610
자산총계	17,389	21,404	28,567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01	196	1,884
부채총계	101	196	1,884
원본	23,936	27,449	37,282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6,648	-6,241	-10,598
자본총계	17,288	21,208	26,683

요약손익계산서			
항 목	4기 ('11.02.15~'12.02.14)	3기 ('10.02.15~'11.02.14)	2기 ('09.02.15~'10.02.14)
운용수익	-948	2,646	6,178
이자수익	38	33	34
배당수익	468	544	361
매매/평가차익(손)	-1,459	2,060	5,757
기타수익	4	9	24
운용비용	216	300	281
관련회사보수	165	235	210
매매수수료	33	38	42
기타비용	18	26	29
당기순이익	-1,165	2,345	5,896
매매회전율 (%)	33	71	95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매매회전율 변동에 관한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항 목	4기 ('12.02.14)	3기 ('11.02.14)	2기 ('10.02.14)
운용자산	17,320	21,453	26,957
증권	16,194	20,072	23,794
주식	0	0	0
ETF	1,154	1,145	2,103
채권	0	1,012	0
매입어음	0	0	0
수익증권	0	0	0
외화유가증권	15,039	17,914	21,691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주가지수매입옵션	0	0	0
ELS	0	0	0
ELW	0	0	0
DLS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부동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026	820	3,162
예금	164	617	569
외화예금	336	1	0
CD	0	0	0
정기예금	0	0	2,300
위탁증거금	524	201	292
청약증거금	0	0	0
기타운용자산	100	560	0
콜론	100	560	0
환매조건부채권	0	0	0
기타자산	68	-48	1,610
미수이자	0	0	0
미수배당금	0	0	0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0	0	1,270
선물정산미수입금	0	46	19
선납(선급)원천세	0	53	0
기타	68	-150	319
자산총계	17,389	21,404	28,567
운용부채	0	0	0
매도유가증권	0	0	0
미지급주식	0	0	0
미지급채권	0	0	0
미지급ETF	0	0	0
주가지수매도옵션	0	0	0
기타부채	101	196	1,884
미지급보수	35	46	56
미지급해지금	28	128	108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미지급원천세	0	0	0
기타부채	36	20	1,719
부채총계	101	196	1,884
원본	23,936	27,449	37,282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6,648	-6,241	-10,598
당기순이익	0	0	0
감자차익/차손	0	0	0
자본총계	17,288	21,208	26,683

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 목	4기 (‘11.02.15~‘12.02.14)	3기 (‘10.02.15~‘11.02.14)	2기 (‘09.02.15~‘10.02.14)
운용수익	-948	2,646	6,178
투자수익	511	586	420
이자수익	38	33	34
배당수익	468	544	361
기타수익	4	9	24
매매이익	4,670	8,552	11,260
주식매매이익	664	2,563	4,438
파생상품매매이익	2,316	2,263	2,043
채권매매이익	0	0	0
외환거래이익	728	1,414	599
유동자산매매이익	0	0	0
ETF매매이익	22	322	395
수익증권매매이익	0	0	0
기타매매이익	939	1,987	3,783
매매손실	6,130	6,492	5,502
주식매매손실	2,278	1,159	-361
파생상품매매손실	2,295	2,006	1,110
채권매매손실	1	5	0
외환거래손실	554	1,761	3,437
유동자산매매손실	0	0	0
ETF매매손실	13	40	222
수익증권매매손실	0	0	0
기타매매손실	987	1,518	1,092
운용비용	216	300	281
위탁보수비	165	235	210
판매보수비	0	0	0
수탁보수비	0	0	0
사무관리보수비	0	0	0
자문보수비	0	0	0
매매수수료	33	38	42
기타비용	18	26	29
당기순이익	-1,165	2,345	5,896
비용	6,347	6,792	5,783
수익	5,182	9,138	11,680
천좌당 순이익(원)	-46	69	16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백만)

① 종류 A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채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09.02.15~ '10.02.14	4,841.0	2,361.0	47,665.0	33,735.0	21,549.0	16,792. 0	30,957.0	19,305. 0	0
10.02.15~ '11.02.14	30,957.0	22,142.0	8,209.0	6,307.0	18,237.0	14,269. 0	20,930.0	14,180. 0	0
11.02.15~ '12.02.14	20,930.0	16,150.0	5,040.0	3,788.0	7,963.0	6,003.0	18,007.0	13,936. 0	0

② 종류 C-e: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채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9.02.15~ '10.02.14	4,510.0	2,205.0	6,528.0	4,519.0	4,714.0	3,432.0	6,325.0	3,291.0	0
10.02.15~ '11.02.14	6,325.0	4,541.0	3,690.0	2,866.0	3,496.0	2,726.0	6,519.0	4,682.0	0
11.02.15~ '12.02.14	6,519.0	5,057.0	2,352.0	1,719.0	2,942.0	2,259.0	5,928.0	4,517.0	0

③ 종류 C-I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채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09.02.15~ '10.02.14	2,500.0	2,500.0	4,141.1	6,309.5	6,641.1	8,809.5	0.0	0.0	0
10.02.15~ '11.02.14	-	-	-	-	-	-	-	-	-
11.02.15~ '12.02.14	-	-	-	-	-	-	-	-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단위:%)

연도 (기간)	최근1년 11.04.01~'12.03.31	최근2년 10.04.01~'12.03.31	최근3년 09.04.01~'12.03.31	최근5년 08.02.15~'12.03.31	설정이후 주2)
투자신탁전체 주1)	-17.96	-5.29	11.8	-7.23	-7.23
종류 A	-18.75	-6.13	10.55	-7.91	-7.91

미래에셋 차이나H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종류 C-e	-18.61	-5.99	10.76	-7.79	-7.79
종류 C-I	-	-	-	-	10.42
비교지수 ^{주4)}	-20.09	-7.09	10.62	-5.21	-5.21

주1)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은 보수 및 수수료 차감전 수익률입니다.

주2) 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3) 운용기간이 표 상단에 기재된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수익률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주4)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지수: 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H-Shar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단위:%)

연도 기간 ^{주1)}	최근1년차 11.04.01~'12.03.31	최근2년차 10.04.01~'11.03.31	최근3년차 09.04.01~'10.03.31	최근4년차 08.04.01~'09.03.31	최근5년차 08.02.15~'08.03.31
투자신탁전체 ^{주2)}	-17.96	8.98	51.48	-41.61	-
종류 A	-18.75	7.97	50.11	-42.27	-
종류 C-e	-18.61	8.14	50.35	-42.14	-
종류 C-I	-	-	30.05	-	-
비교지수 ^{주4)}	-20.09	7.41	53.62	-33.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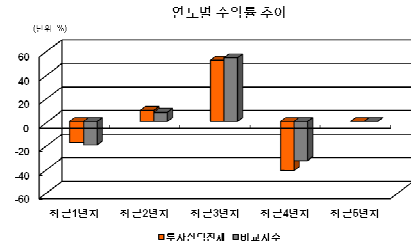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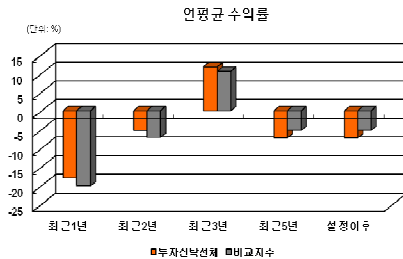
주1) 위의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기간수익률입니다.

주2)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은 보수 및 수수료 차감전 수익률입니다.

주3) 운용기간이 표 상단에 기재된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수익률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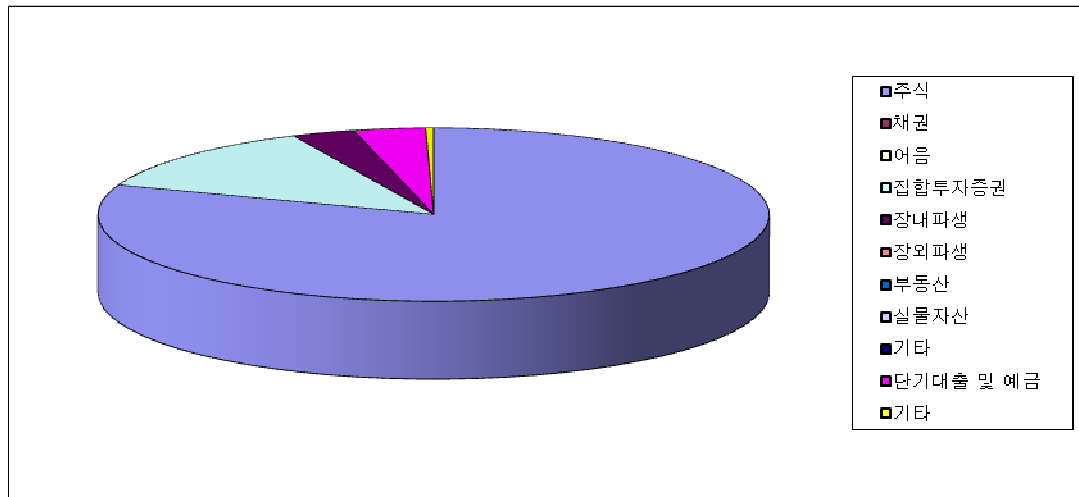
주4)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지수: 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H-Sh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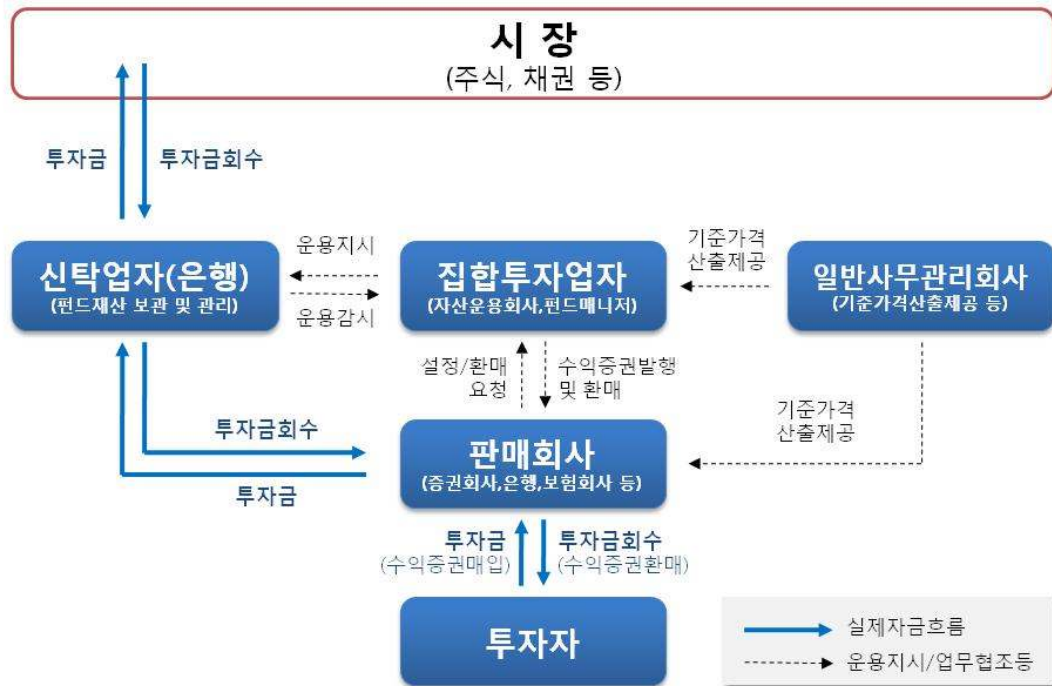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 백만, %, 2012.02.14 기준)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한국)	0	0	0	1,154	56	0	0	0	0	265	68	1,544
	0.00	0.00	0.00	6.64	0.32	0.00	0.00	0.00	0.00	1.52	0.39	
USD(미국)	0	0	0	0	6	0	0	0	0	0	0	5
	0.00	0.00	0.00	0.00	0.03	0.00	0.00	0.00	0.00	0.00	0.00	
HKD(홍콩)	13,999	0	0	1,041	463	0	0	0	0	337	0	15,839
	80.50	0.00	0.00	5.99	2.66	0.00	0.00	0.00	0.00	1.94	0.00	
합계	13,999	0	0	2,195	525	0	0	0	0	602	68	17,389
	80.50	0.00	0.00	12.63	3.02	0.00	0.00	0.00	0.00	3.46	0.39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67번지 미래에셋 센터원빌딩(우.100-210) ☎ 1577-1640
홈 페이지 주소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자 본 총 계	6,680억원 (2011년 3월 31일기준)
주 요 주 주 현 황	박 현 주 외
회 사 연 력	1997년 07월 미래에셋 설립 2006년 11월 미래에셋투신운용주식회사 합병 2012년 3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운용지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항 목	'11.3.31	'10.3.31	항 목	'10.04.01~'11.03.31	'09.04.01~'10.03.31
현금 및 예치금	1,644	2,429	영업수익	3,250	3,845
유가증권	4,646	3,119	영업비용	1,629	1,649
대출채권	9	16	영업이익	1,621	2,196
유형자산	330	322	—		
기타자산	609	686	—		
자산총계	7,238	6,572	영업외수익	52	170
예수부채	30	165	영업외비용	113	100
기타부채	528	629	—		
부채총계	558	794	—		
자본금	570	570	—		
이익잉여금	6,027	5,138	—		
기타포괄손익누계	-140	-152	법인세차감전이익	1,560	2,266
자본총계	6,680	5,778	당기순이익	1,172	1,716

라. 운용자산 규모(2012.02.29 현재 / 단위:십억원 / 협회 발표기준)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권					단기 금융	파생 상품	부동산	실물	재간접	특별 자산	투자 일임기타	총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소계								
수탁고	25,975	4,886	3,358	14,055	48,274	1,368	906	2,674	0	322	851	14	54,40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는 당해 투자신탁에서 지급하며, 위탁의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한국씨티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 02-3455-2114, 1588-5754
홈 페이지 참조	www.citibank.co.kr
회 사 연 혁	1981년 9월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

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미래에셋펀드서비스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우.150-994) ☎ 02-769-7800
홈 페이지 참조	http://fs.miraeasset.com
회 사 연 혁	1998년 11월 (주)한국채권연구원 설립 2000년 8월 금융감독원 일반사무관리업 등록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 02-399-3350
홈 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회 사 연 혁	2000년 5월 설립

회 사 명	나이스채권평가(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 02-398-3900
홈 페이지 참조	www.npricing.co.kr
회 사 연 혁	2000년 6월 설립

회 사 명	KIS채권평가(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33
홈 페이지 참조	www.bond.co.kr
회 사 연 혁	2000년 6월 설립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 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

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등 운용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 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로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

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 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 10)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 매매대가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신탁업자	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펀드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형펀드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채권형펀드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펀드로서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혼합/채권혼합형 펀드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서, 주식에 최대 50%이상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주식혼합형, 주식에 최대투자 가능비율이 50% 미만인 펀드를 채권혼합형이라고 말합니다.
상장지수펀드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어,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까지의 총 발행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통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거래규모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효과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현행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용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능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특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은행등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DISCLAIMER]

The **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the "Index") is published and compiled by HSI Services Limited pursuant to a license from 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 The mark and name [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are proprietary to 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 HSI Services Limited and 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 have agreed to the use of, and reference to, the Index by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CO., LTD.** in connection with **MIRAE ASSET CHINA-H INDEX EQUITY TRUST 1** (the "Product"), **BUT NEITHER HSI SERVICES LIMITED NOR 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 WARRANTS OR REPRESENTS OR GUARANTEES TO ANY BROKER OR HOLDER OF THE PRODUCT OR ANY OTHER PERSON (i)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ANY OF THE INDEX AND ITS COMPUTATION OR ANY INFORMATION RELATED THERETO; OR (ii) THE FITNESS OR SUITABILITY FOR ANY PURPOSE OF ANY OF THE INDEX OR ANY COMPONENT OR DATA COMPRISED IN IT; OR (iii) THE RESULTS WHICH MAY BE OBTAINED BY ANY PERSON FROM THE USE OF ANY OF THE INDEX OR ANY COMPONENT OR DATA COMPRISED IN IT FOR ANY PURPOSE, AND NO WARRANTY OR REPRESENTATION OR GUARANTEE OF ANY KIND WHATSOEVER RELATING TO ANY OF THE INDEX IS GIVEN OR MAY BE IMPLIED.** The process and basis of computation and compilation of any of the Index and any of the related formula or formulae, constituent stocks and factors may at any time be changed or altered by HSI Services Limited without notice.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NO RESPONSIBILITY OR LIABILITY IS ACCEPTED BY HSI SERVICES LIMITED OR 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 (i) IN RESPECT OF THE USE OF AND/OR REFERENCE TO ANY OF THE INDEX BY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CO., LTD.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 OR (ii) FOR ANY INACCURACIES, OMISSIONS, MISTAKES OR ERRORS OF HSI SERVICES LIMITED IN THE COMPUTATION OF ANY OF THE INDEX ; OR (iii) FOR ANY INACCURACIES, OMISSIONS, MISTAKES, ERRORS OR INCOMPLETENESS OF ANY INFORMATION USED IN CONNECTION WITH THE COMPUTATION OF ANY OF THE INDEX WHICH IS SUPPLIED BY ANY OTHER PERSON; OR (iv) FOR ANY ECONOMIC OR OTHER LOSS WHICH MAY BE DIRECTLY OR INDIRECTLY SUSTAINED BY ANY BROKER OR HOLDER OF THE PRODUCT OR ANY OTHER PERSON DEALING WITH THE PRODUCT AS A RESULT OF ANY OF THE AFORESAID, AND NO CLAIMS, ACTIONS OR LEGAL PROCEEDINGS MAY BE BROUGHT AGAINST HSI SERVICES LIMITED AND/OR 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 in any manner whatsoever by any broker, holder or other person dealing with the Product. Any broker, holder or other person dealing with the Product does so therefore in full knowledge of this disclaimer and can place no reliance whatsoever on HSI Services Limited and 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 For the avoidance of doubt, this disclaimer does not create any contractual or quasi-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any broker, holder or other person and HSI Services Limited and/or 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 and must not be construed to have created such relationship.

[알림]

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이하 '지수')는 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과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HSI Services Limited가 발표하고 관리합니다. **HSCEI (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의 상표와 이름의 소유권은 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에게 있습니다. HSI Services Limited와 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는 미래에셋자산운용사가 미래에셋 차이나 H 인덱스 주식형투자신탁1호("펀드")와 관련하여 당 지수를 사용하거나 참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HSI Services Limited와 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는 그 어떤 중개자나, 펀드가입자 및 제 3자에게 (i) 지수, 지수의 계산,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 (ii) 지수의 목적 및 지수에 포함된 내역 및 데이터의 적합성 및 적절성 및 (iii) 지수나 지수에 포함된 내역 및 데이터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나 지수가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HSI Services Limited는 공지 없이 언제든지 인덱스의 계산/수집 방식과 절차 및 이와 관련된 공식, 구성종목 및 관련요소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HSI SERVICES LIMITED** 와 **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 는 (i) 펀드와 관련하여 미래에셋자산운용사가 지수를 사용하거나 참고하는 것, (ii) **HSI SERVICES LIMITED**가 지수를 계산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누락, 실수, 오류, (iii) 지수계산과 관련하여 제 3자가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성, 누락, 실수, 오류 및 불완전성, (iv) 앞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개자, 펀드가입자 또는 펀드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및 다른 손실에 대해 책임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펀드와 관련하여 어떤 중개자, 펀드 보유자 또는 관련자도 **HSI SERVICES LIMITED와 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청구나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자, 펀드가입자 또는 관련자는 이 [알림]의 내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며 HSI Services Limited와 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에게 어떤 책임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 중개자, 펀드 가입자 또는 제 3자와 HSI Services Limited/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간에 계약/준계약적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